# 

#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55조, 규칙 제35조 및 제40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구 대상사업을 파악한 후 종합적인 정책연구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정책연구 관리계획에는 당해 연도 예산현황, 관리체계, 추진 절차 및 방법, 성과점검 계획, 수행 시 고려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총괄부서장(간사)의 주요임무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 연구과제별 진행상황 점검(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확인) 후 과제담당관에게 시정 요구
- 해당 기관의 정책연구 성과점검 및 결과 행안부 제출
- 그 밖에 정책연구 추진에 관한 과제담당관의 업무 총괄·조정

# 나. 과제의 선정(규정 제51조, 규칙 제37조 및 제4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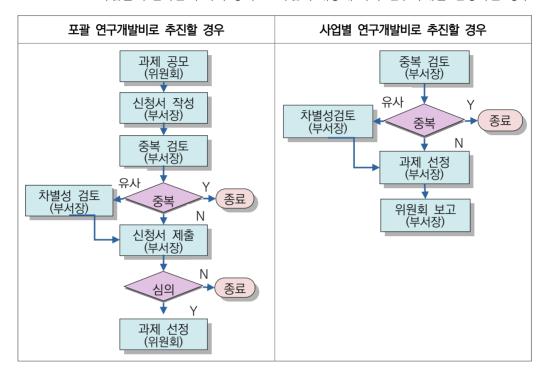
#### 1) 개 요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1) 규정 제51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사유

- 「국가계약법」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 2) 국민의견 수렴

포괄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각함, 소통24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3)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 가)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 나)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과 제 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 근거규정 : 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

#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 □ 관련 선행연구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년도)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등
1	(2124)		
<u> </u>			
2			
3			
4			
5			

#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과 제 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새로운 정책 연구 필요성	

※ 근거규정 : 규칙[별지 제10호의3 서식]

## 다)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에 대해 정책 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정책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심의한 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와 유사·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라)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 과제담당관 주요 임무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규정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 규정 제55조에 따른 해당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 4)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 가) 과제 선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 나) 과제 선정 보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 연구가 없는 경우에는'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과 제 명	
신청부서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 ] 위탁형 [ ] 공동연구형 [ ] 자문형
연구기간	~ ( 개월)
예산항목	[ ] 포괄 연구개발비 [ ] 사업별 연구개발비
예상금액	
계약방법	
연구 필요성	
연구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중복검토 방법:
	유사·중복 여부: [ ] 있다 [ ] 없다 ※ 유사·중복되는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 ] 수렴 [ ] 미수렴 ※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연구내용	
연구결과 활용방안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심의 결과	

※ 근거규정 : 규칙[별지 제10호의4 서식]

# 다)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장이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 다.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규칙 제3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 1) 중복 검토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중복 여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정책 연구 DB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책연구과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행하려는 정책연구과제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의 중복 여부 판단

- ▶ 정책연구과제의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위의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를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 ⇒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 과제의 중복에 해당

# 라. 과제의 변경(규칙 제39조)

과제담당관은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부서의 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 포괄 연구개발비 과제 변경

포괄 연구개발비로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 2)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 변경

부서의 장이 선정한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과제를 선정한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마. 과제 선정결과 등록(규정 제54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